

산재예방 연구브리프

OSH Research Brief

2020년 제23호

발행일 2020년 11월 27일

발행인 고재철

주 소 44429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자료문의 연구기획부 052-703-0813

발간번호 2020-산업안전보건연구원-824

제23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효성 제고 방안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아니한 경우 및 위원회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 구성 운영과 관련한 실태조사에 결과에 의하면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는 응답은 절반정도에 불과하며 노사협의회에 의하여 위원회를 갈음하고 있다는 응답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사업주와 노동자 간의 안전보건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의사결정 장치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신고의무 도입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일본, 독일, 영국, 미국의 위원회 설치 운영의무 규정 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보고서 제목 외국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연구(2019)**연구책임자** 한국노동연구원 김기선 연구위원**연구담당자**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송안미 연구위원

I. 서론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 설치 의무규정을 마련하여 산업안전보건에 근로자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로써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한국갤럽이 실시한 산업안전보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응답이 51%, 노사협의체로 갈음하고 있는 응답은 40.2%,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응답이 7.2%, 설치되어 있지는 않지만 노사가 별도로 회의를 실시한다는 응답이 1.6%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위원회의 작동성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일본, 독일, 영국, 미국의 위원회 제도를 살펴보고 이들의 위원회 구성과 운영, 신고의무규정 등 법적 근거를 검토해 우리나라와 비교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연구내용

1.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법 규정 및 제도

산안법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24조).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의 경우 150억원) 이상인 건설현장은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토사석 광업, 1차금속 제조업 등 9개의 유해·위험업종의 사업은 50명

이상이면 설치대상이 되고, 농업, 금융 및 보험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10개 업종은 30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설치된다. 한편 노사동수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토록 규정되어 있다.

2. 외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법 규정 및 제도

(1) 일본

일본에는 안전위원회와 위생위원회가 있다. 안전위원회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 대책을 수립하고, 산업재해의 원인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며, 그 외 근로자의 위험방지에 관한 중요 사항에 관해서 조사·심의하고 사업주에게 의견을 말하기 위한 것이다. 위 2개의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위생위원회 1개를 설치함으로써 위 2개 위원회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의 노동안전위생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70-80%가 안전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보다 설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생노동성의 제13차 산업재해방지계획(2018~2022)에서는 고용형태의 차이에 관계없이 안전위원회·위생위원회·안전위생위원회의 참여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설치 확대보다는 산업현장 및 노동환경의 변화에 맞게 이들 3개의 위원회가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2) 독일

「산업보건의 및 산업안전전문인력에 관한 법률(Arbeitssicherheitsgesetz)」은 사업장 내의 산업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기본적인 법률로써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협력 및 의사소통의 활성화를 위해 취업자가 상시 20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한 위원회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은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분기당 1회의 회의 개최만을 규정할 뿐, 운영방식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다룰 의제 등에 대하여는 사업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에서 위원회를 설치하는 사용자의 의무는 공법상의 의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위원회를 설치하는 않는 경우 근로자 대표 위원회는 사업조직법에 근거하여 관할 산업안전보건행정관청에 신고할 수 있다. 관할 행정관청은 사용자에게 위원회의 설치를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3) 영국

영국의 안전보건제도의 특징은 제도의 실질적 운영에 대하여 상당 부분을 노사 자율에 맡기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노사자율에 맡긴다고 하여 행정당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행위준칙을 제정하여 제도의 표준을 매우 자세하게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감독행정은 행위준칙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준대로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고려하여 동일하거나 혹은 유사한 형태로 구현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데, 이러한 방식은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을 담보하면서 사업주의 재량을 존중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산안법 체계와 감독행정에서는 여전히 개별 규정의 형식적 준수를 강조하고 있어 비교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영국의 위원회 제도는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거나 설립되어 있어도 안전대표자의 요청이 없으면 사업주가 안전위원회를 설치할 의무는 없다. 이렇게 제한적인 형태로 안전위원회를 운영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영역에서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핵심 제도는 안전위원회가 아니라 안전대표자 제도이기 때문이다. 다만, 안전위원회의 설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12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0 파운드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여질 수 있다. 노동조합 조직의 확대는 영국의 사례와 같이 위원회의 작동성 및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4) 미국

미국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연방법인 「OSH Act」는 사업장 내 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의무 및 설치 신고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다수의 주(州)법은 당해 주의 산업안전보건법령이나 근로자재해보상법령을 통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용자에게 사업장 내 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의무를 직접 부과하거나, 근로자와의 의사소통 시스템의 일부로 사업장 내 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를 간접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나 운영에 관하여 감독행정을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있지는 않으며, 위 위원회 설치를 주무관청(OSHA 또는 주정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OSH Act가 개별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사업장을 조사하도록 OSHA에 비공개로 민원을 제기할 권리 및 사용자에게 위험에 대한 정보와 훈련 등을 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 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에 관하여 사전에 신고를 의무화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도 이유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표] 우리나라와 외국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도 비교

	우리나라	일본	독일	영국	미국
설치요건	• 상시 100인 이상 또는 공사 금액 120억(토목공사 150억) • 9개 유해·위험업종 상시 50명 이상 • 농업 등 10개업종 상시 300인 이상	• 위생위원회: 전 업종 50인 이상 • 안전위원회: 산재발생위원회 따라 50인 또는 100인	• 상시 20인 이상	• 2명 이상의 안전대표자가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 연방법 명문 규정 없음 • 각 주법에서 설치의무 부과하는 주 있음
권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중요 업무심의·의결	안전보건기본대책 등 사항	산업안전보건 및 재해예방에 대한 협의 또는 자문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평가·검토	각 주법에서 규정
구성	노사 동수, 각 9명 이내	위원 자격은 규정, 위원 수는 규정 없음	사용자 또는 위임자, 근로자 대표위원 2인, 산업보건의, 산업안전전문인력, 안전위촉자	명문 규정 없음	각 주법에서 규정
운영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분기별 정기회의	매월 1회 개최	분기별 1회	명문 규정 없음	각 주법에서 규정
벌칙	미설치 및 불성실이행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부과	미설치시 50만엔 이하 벌금	최대 25,000유로 과태료	징역 또는 벌금	각 주법에서 규정
설치신고의무	현행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그러나 미국의 안전보건위원회는 20세기 초반 이후 개별 사업장의 단체협약을 통해 형성된 것이어서 제조업 사업장 다수에서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사업장 내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장 내 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에 미국 내에서 하나의 노사관행으로 안착된 것으로 평가된다.

III.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산업안전보건위원회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위원회 설치 신고의무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일본, 독일, 영국, 미국과 같이 설치신고 의무 외에 현행법상 이미 규정되어 있는 설치의무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신고 등을 통한 과태료 등의 벌칙을 부과하는 방법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참여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와의 균형성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노사협의회에 대해서는 설치 신고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신고의무 제도 도입에 따른 균형의 차이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개별 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가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을 행정관청에 적극적으로 신고 또는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관청이 사용자에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하도록 명령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보다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해 추가되는 행정적인 부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실태조사를 통해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에 자발적인 위원회 설치를 유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